

산 립 복 지 진 흥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1. 개정이유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산림복지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조사하던 “기초조사”를 “실태조사”로 용어변경하고, 국민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해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 표기사항에 업무범위를 추가하는 한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발급 대상인 산림복지소외자에 한부모가족 등이 추가됨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발급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서류에 한부모가족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3조)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8262호, 2021.6.15.)에 따라 법 제6조에서 규정한 산림복지진흥계획 수립을 위해 조사하던 “기초조사”를 “실태조사”로 용어변경

나.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 표기사항 등에 업무범위 추가(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 국민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해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증 표기사항에 업무범위를 추가하고, 산림복지전문업 등록대장에도 해당 산림복지전문업의 업무범위를 기재하도록 함

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발급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서류에 한부모가족 등을 추가(안 제13조 및 관련 별지 제10호서식·별지 제11호서식)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발급 대상인 산림복지소외자에 한부모가족

등이 추가됨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서류에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추가하고, 신청서식에 한부모가족 등을 추가함

※ 상기의 내용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되는 것을 전제로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기초조사의 범위 등)”을 “(실태조사의 범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초조사”를 각각 “실태조사”로 한다.

제13조제3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별지 제6호서식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서식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업무범위: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림복지전문업 등록대장

등록번호		등록일	
산림복지전문업의 종류			
업무범위			
법인명(상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무실 주소			
자본금			
전문인력 보유현황			
대표자 성명(생년월일)			

변경사항

연월일	변경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확인자(서명)

210mm×297mm[백상지(80g/㎡)]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규발급 []재발급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90일 이내
------	-----	-----	-------------

① 세대주 정보	성명(국문)	주민등록번호
	주소	

② 발급 신청인 정보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전자우편주소	대상유형 (해당 사항 모두 선택)	합산카드 신청여부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전자우편 수신동의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수당 [] 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 [] 장애아동수당 [] 한부모가족 []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여[] 부[] 대표자[]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전자우편 수신동의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수당 [] 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 [] 장애아동수당 [] 한부모가족 []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여[] 부[] 대표자[]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전자우편 수신동의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수당 [] 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 [] 장애아동수당 [] 한부모가족 []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여[] 부[] 대표자[]

③ 대리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	------	-----------------------

④ 대리 신청인과의 관계	[] 부모 [] 친족 [] 배우자 [] 후견인 [] 장애인 보호자 [] 청소년보호사, 상담사, 청소년기관 지도사, 교사, 학교장 등 [] 기타 ()
------------------	--

작성방법 및 공지사항

- 발급 대상자가 3명을 넘을 경우 이 페이지를 추가하여 출력한 후 작성하시면 됩니다.
- 문자서비스 및 전자우편 수신동의 시 사용 명세 및 잔액,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관련 정보 등 주요 공지사항이 전달됩니다.
- 대상유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장애수당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중 해당하는 유형에 모두 √ 표시 합니다.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합산카드 발급(발급 금액 합산)을 원하시면 합산카드 신청 여부에 √ 표시 및 대표자에 √ 표시 합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신규발급,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귀하

첨부서류	제2쪽 참조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청인 제출서류 (3번~5번까지는 대리 신청하는 경 우에 한정합니다)	1.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는 제외합니다) 2.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3.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4.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위임장	수수료 없 음
한국산림복지 진흥원 확인 사항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증명서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4의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5.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산 림복지소외자의 부모 또는 그 밖의 친족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한국산림
복지진흥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서류란
제1호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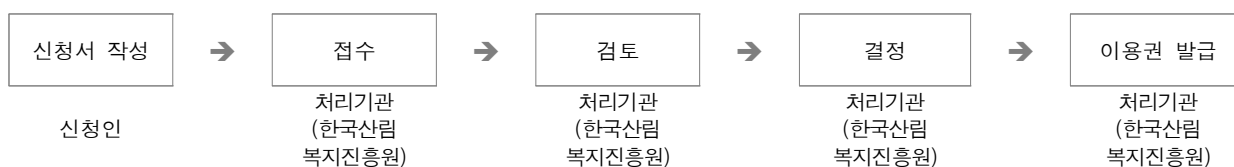
년 월 일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인 1.	(서명 또는 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인 2.	(서명 또는 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인 3.	(서명 또는 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인 4.	(서명 또는 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14세 미만 청소년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발급 대상자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대리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세 미만 청소년이 직접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위임장을 첨부해야 합니다.
- 해당 연도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금액은 국가로 자동 반납되며 환불되거나 이월되지 않습니다.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이용지침을 숙지하여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산림복지서비스의 내용은 산림복지시설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발급·관리 업무	5년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공 받는 자	제공 항목	제공목적	보유기간
산림복지이용권발급 사무위탁기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발급과 관련 자격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	5년
보건복지부, 여성 가족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발급 자격 확인	5년
발급위탁금융기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발급	5년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발급을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발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며, 그 정보를 산림복지이용권발급 사무위탁기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발급위탁금융기관에 제공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제공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공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 14세 미만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아래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고 위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인 1.	(서명 또는 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인 2.	(서명 또는 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인 3.	(서명 또는 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인 4.	(서명 또는 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귀하

[]신규발급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재발급
신청서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3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90일 이내			
단체 신청 정보	단체 구분	[] 노인복지시설 [] 여성복지시설 [] 아동복지시설 [] 부랑인복지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그 밖의 시설()	
	카드발급인원	총 ()명	
	단체명	담당자 성명(담당자가 있는 경우)	
	주소		
	담당자 연락처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담당자 전자우편주소 [] 전자우편 수신동의	
대표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전자우편주소 [] 전자우편 수신동의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제4항 따라 위와 같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신규발급,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귀하

제출서류	1.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는 제외합니다) 2.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사본 3.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회복지시설 대표자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사본 5. 사회복지시설의 담당자가 있는 경우 담당자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사본 6. 위임장	수수료 없 음
한국산림복지 진흥원 확인 사항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증명서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4의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신청서 대상자 현황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대상유형 (해당사항 모두 표시)	④ 연락처	⑤ 전자우편주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연금 []한부모가족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전자우편 수신동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연금 []한부모가족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전자우편 수신동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연금 []한부모가족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전자우편 수신동의

- ① 발급 대상자가 3명을 넘을 경우 이 페이지를 추가로 출력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② 문자서비스 및 전자우편 수신동의 시 사용 명세 및 잔액,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관련 정보 등 주요 공지사항이 전달됩니다.
 ③ 대상유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장애수당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연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그 밖에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중 해당하는 유형에 모두 √ 표시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서류란 제1호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인 1. (서명 또는 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인 6. (서명 또는 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인 2. (서명 또는 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인 7. (서명 또는 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인 3. (서명 또는 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인 8. (서명 또는 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인 4. (서명 또는 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인 9. (서명 또는 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인 5. (서명 또는 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인 10.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는 해당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해야 하며, **대상자가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해야 합니다.**
2. 해당 연도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사업기간이 종료된 후 남은 금액은 국가로 자동 반납되며 환불되거나 이월되지 않습니다.
3.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이용지침을 숙지하여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 등을 할 수 없습니다.
4. 산림복지서비스의 내용은 산림복지시설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류검토	➔	결정	➔	이용권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한국산림 복지진흥원)		처리기관 (한국산림 복지진흥원)		처리기관 (한국산림 복지진흥원)		처리기관 (한국산림 복지진흥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기본개인정보수집·이용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발급·관리 업무	5년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공 받는 자	제공 항목	제공목적	보유기간
산림복지이용권발급 사무위탁기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발급과 관련 자격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	5년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성명, 주민등록번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발급 자격 확인	5년
발급위탁금융기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발급	5년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발급을 실시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발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며, 그 정보를 산림복지이용권발급 사무위탁기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발급위탁금융기관에 제공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제공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공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 14세 미만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아래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고 위의 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인 1. (서명 또는 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인 2. (서명 또는 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인 3. (서명 또는 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인 4. (서명 또는 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인 5. (서명 또는 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인 6. (서명 또는 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인 7. (서명 또는 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인 8. (서명 또는 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인 9. (서명 또는 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인 10. (서명 또는 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대리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귀하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u>기초조사의 범위 등</u>)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u>기초조사</u> 에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어야 한다. 1. ~ 9. (생략) 10. 그 밖에 <u>기초조사</u> 에 필요하 다고 산림청장이 인정하는 사 항 ② 제1항에 따른 <u>기초조사</u> 는 현 지조사, 통계조사, 문헌조사 또 는 우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①·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서를 제출받은 한국산림복지진 흥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 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한 국산림복지진흥원이 해당 서류 를 확인할 수 없거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3조(<u>실태조사의 범위 등</u>) ① -- ----- <u>실태조사</u> ----- ----- -----. 1. ~ 9. (현행과 같음) 10. ----- <u>실태조사</u> ----- ----- -- ② ----- <u>실태조사</u> ----- ----- ----- -----. 제13조(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의 발급 신청) ①·② (현행과 같 음) ③ ----- ----- ----- ----- ----- -----. ----- ----- ----- -----

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 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u><신 설></u> 5. (생 략) ④ (생 략)	----- -----.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한부모가족지원법」에</u> <u>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u> 5.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